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6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이성만・맹성규・기동민

이형석 · 김경만 · 정성호

김진애・박영순・박성준

이수진(비)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열위적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그간임대인 동의 요건이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작용해 왔음.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

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1807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2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자 또는 임차인은"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를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	
용하려는 <u>자는</u> 건물에 대한 <u>임</u>	<u>자 또는 임차인은</u>
<u>대차계약을 하기 전에</u> 임대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	<u>을 인도받기 전까지</u>
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